

해외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중국의 농업관련 지적재산 제도와 원산지보호 제품의 생산·가공·유통 실태조사
2. 출장목적: 중국 농업관련 지적재산권 제도 조사, 절강성 원산지보호 제품의 등록 및 관리 실태 조사, 중국 용정차·소흥주의 생산·가공·유통 실태 조사
3. 출장지역: 중국 북경, 항주
4. 출장기간: 2008. 4. 14 - 4. 20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성 명 환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4. 14(월)	이동(서울→북경)	
4. 15(화)	북경	중국 농업과학원
4. 16(수)	이동(북경→항주)	
4. 17(목)	항주	절강성 품질감독검역국 담당자
4. 18(금)	항주	소흥주 생산 기업 담당자 면담
4. 19(토)	항주	용정차 생산 기업 관리자 면담
4. 20(일)	이동(항주→서울)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연구원	王志本	86-10-62120690
절강대학 관리학원 농업경제관리계	주임	錢文榮	86-571-86971590
회계산소홍주주식유한회사	사무장	柳根	86-575-85159019
항주서호용정차유한공사	사무장	威國佛	86-571-87985538

II. 주요 출장 결과

□ 중국 농업과학원 방문 결과

1. 중국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실시 배경 및 전망

- 중국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오랜 농경문화를 지닌 다양한 농업지역을 가지고 있음. 그 중 다수의 농업지역은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생산조건 아래 특정한 품질을 가진 농산품을 생산하고 있음. 게다가 중국의 오래된 음식문화는 현지가공을 통해 뛰어난 품질을 지닌 상품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광범위하면서도 특정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음. 이런 농산품은 주로 특정상표보다는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 지역명칭을 사용하여 생산,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는 바로 현재 중국 수많은 농산품이 전통적인 이름과 특정지역명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찍이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소홍주", "모태주", "용정차", "금화화퇴" 등은 모두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를 받는 상품으로 그 상품의 품질, 맛, 질, 명성, 기타 특징을 유추할 수 있음.
- 중국은 1990년대에는 원산지 명칭 상품 및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작업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따라서 원산지명칭 표시를 지닌 많은 전통상품, 특산품이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

- 농산물의 원산지표기의 남용은 같은 종류의 다른 품질을 가진 상품을 모두 같은 원산지라는 이름아래 획일화 시킬 수도 있으며 더욱이 원산지의 이름을 빌어 질 낮은 혹은 가짜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예를 들어 중국 절강성에서 생산되는 소홍주는 그 원산지의 이름을 딴 상품인데 소홍주는 24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중국전통 술문화에서 강한 전통적 색채를 지닌 대표적인 술로 자리 잡음. 소홍주는 특정한 지방에서만 나오는 깨끗한 물과 세심히 골라낸 찹쌀, 그리고 전통적인 누룩을 사용하며 독특한 양조법과 저장방법(특수한 토양, 기후, 온도, 일조 시간 등)을 통해 소홍주 특유의 색, 향, 맛, 품격을 만들어 냄. 맑은 오렌지 빛깔, 진하고 감미로운 맛, 그리고 사람을 끄는 맑은 향기와 깔끔한 뒷맛을 지닌 소홍주는 몇 천년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해외로까지 수출이 되었음. 그러나 중국 내 소홍주 생산지역이 아닌 곳에서 빈번히 "소홍주"의 이름을 빌어 시장에 내놓거나 심지어는 외국에 수출까지 한 경우도 있음 (대만 및 일본, 그리고 동남아등지에서도 소홍주를 대량으로 생산했으며 상해에서는 가짜 소홍주가 시장의 반을 점유). 이는 몇 천년 역사를 가진 소홍주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소홍주 생산업체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
-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농산물 무역방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초급농산물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생산원가, 품질, 질량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재 그리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경쟁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 하지만 동시에 WTO의 가입은 중국 국내 농업계와 농산물 무역에 있어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했음. 지리적표시제도의 실시는 중국의 특산물, 명산물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중국농업이 비교우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 또한 전통명산물, 특산물의 산업화, 수준 높은 표준화, 다양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전반적인 기능 확장 면에서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중국내 농산물 생산 및 무역 수준 향상과 시장경쟁력강화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업의 발전을 통해 중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2. 중국 지리적표시제도의 제정 및 실시 방안

- 중국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제도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감. 1993년 수

정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의 <실시세칙>에서 “상표증명” 등록 방식으로 원산지명칭을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보호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음. 이 규정에 의거하여 소참벼, 채양배, 장주감귤, 황암도라지, 안계 철관음, 여포 토란, 부릉 자채, 장구 대파, 금향마늘, 용유 고추, 비현 콩짜개, 효감 미주, 중녕 구기자, 고전 흰목이 버섯, 경덕진(도기)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 감귤 등 100가지 물품이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표시에 따라 상표 증명 등록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적이 있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중국은 여전히 원산지명칭상품 및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명확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없음.

- 2001년<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의 재수정후, 제16조에서 정식으로 “지리적표시”라는 개념을 추가하였으며, “지리적표시 상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며, 지리적 표시는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신뢰도 및 기타 특징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 요소 혹은 인문요소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알리는 표시임”이라고 명시하였음. 본 법의 <실시조례>에서는 “상표증명 및 집단상표를 사용하여 생산지 표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동시에 <집단상표 및 상표증명의 등록과 관리 방법>을 공포했음. 이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홍콩쌀, 평곡 복숭아, 쿠얼라이 배, 탕산 배, 하미과, 화산 배추, 육안 녹차, 몽산차, 경산차, 한성 산초, 태흥 은행, 청원 닭, 산서 식초 등이 원산지 상표 증명 등록을 마쳤음.
- 인터넷상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공상 상표관리국은 1995년 3월부터 2007년 5월 말까지 상표 증명의 방식으로 원산지 표기 보호를 실행하여 총 251건의 상품을 등록하였음. 그 중 중국 내국인의 등록은 227건, 외국인의 등록은 21건이며 이 중 내국인이 등록한 상품은 28개 성과 291개 자치구, 직할시에 영향을 미침. 중국이 지리적표시에 등록한 상품은 주로 사과, 차잎, 쌀, 닭, 황주(酒)등이며 그밖에 농업부산물 및 도기를 비롯한 석조공예품임. 외국의 지리적표시에 등록한 상품은 주로 감귤, 감자, 커피, 쌀, 비단, 공구, 치즈, 용설란주(酒) 등임.
- 2003년 3월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의 제23조는 “지정된 생산지 및 생산방식에 부합되는 농산물은 농산물 관련법에 따라 농산물 지리적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였음. 또한 2004년 12월 7일

중국공상행정관리국 농업부는 <농산물 지리적표시 및 상표 등록 사업 강화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여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지도성 의견을 제출하였음.

- 그 이전인 1999년 8월17일, 전 중국품질기술감독국(현 국가품질감독검열총본)은 <원산지상품보호규정>을 발표하였음. 본 규정에서는 지리적표시상품을 “특정지역에서 생산되고, 그 지역의 자연요소 및 인문요소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징이 결정된 것으로, 지리적 명칭에 대한 심사를 거쳐 비준된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원산지 상품보호 통용요구>(GB17924-1999)에서는 “원산지역상품”은 Products of designations of origin 혹은 Geographical indications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실상 원산지명 상품이나 생산지명 상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지리적표시상품은 “현지에서 직접 재배, 양식한 상품” 그리고 “원재료를 모두 현지에서 조달하거나 부분적으로 타지에서 조달하여 현지 특유의 가공방법을 거쳐 생산된 상품”을 포함함. 국가품질감독검열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보호 사무국”은 원산지명 상품보호관련 신청, 등록 및 관리업무를 책임짐. 이 규정에 의거하여 소홍주, 모태주, 창리 포도주, 용정차, 동정벽라춘차, 길림장백산 인삼, 문산삼철, 연대사과, 남풍감귤, 반금 쌀, 심주황 좁쌀, 선지 등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상품 보호를 실행하였음.
- 2001년 중국출입국검사검역국은 원산지상품보호 업무에 관련된 <원산지표기관리규정>을 발표하였음. 본 규정에서 원산지표시라고 하는 것에는 “원산국표시”와 “지리적표시”가 있는데 그 중 “지리적표시는 한 국가나 지역 혹은 특정지방의 명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품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었고, 그 상품의 특성이 그 지역의 지리환경, 자연조건, 인문배경의 요소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때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산지표기관리규정 실행법>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은 “특정지역의 이름을 따온 상품, 그리고 상품의 재료가 대부분 그 현지에서 조달된 것 혹은 기타 일부 재료는 다른 지정지역에서 조달되어온 것,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적요소 및 전통적인 가공, 제조방법을 통해 그 지역 만의 특징을 지니는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원산지표기관리규정>에 따라 등록, 보호되어야 할 지리적표시상품에는 통녕소고기, 초원홍발 오골계, 문창 닭, 태호병어, 여사해파리, 관계 유자, 부릉자채, 용천매주, 동아 아교, 장주수선화 등이 있음.

- 2005년 5월 16일 중국품질검사총국은 1999년의 <원산지역상품보호규정>을 대신하는 <지리적표시상품보호규정>을 공포했음. 그리고 전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 2001년에 공포했던 <원산지표시관리규정> 및 <원산지표시관리규정 실행방법>의 내용 중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본 규정과 일치시켰음. 새로이 제정된 규정은 지리적표시상품 보호와 관련된 신청, 심사, 등록 및 관리에서 국가품질검사총국과 일관된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이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연변쌀, 매하쌀, 향수쌀, 광영좁쌀, 승인임계, 선성 오리, 고시계(닭), 선거계, 동산 건어물, 삼문 청계, 칠리 해하계, 반금 민물게, 용봉차, 영덕홍차, 정화백차, 노산녹차, 대홍 수박, 창평 사과, 청주 복숭아, 매주 유자, 주지미후 복숭아, 남산 여지, 절강성 단감, 회리 석류, 선화우유 포도, 경동 왕밤, 흑산 화생, 안구 생강, 창산 마늘, 위해 미역, 창산 산차유, 익양 떡, 예룽 도기 등의 상품에 대해 지리적표시상품보호를 실시하였음. 중국품질검사총국은 1999년부터 2007년 7월까지 700여 종의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상품보호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대다수인 농산물에 대해 5,000여개 기업이 지리적표시상품 전용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하였음.
- 농업부는 2007년 12월 25일에 수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한 <농산물지리적표시관리제도>을 공포하였음. 이 법에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초급 상품, 즉 농업활동 중 획득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기타 상품”을 의미함. 이 법에서 농산물지리적표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상품 품질 및 관련 특징이 그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및 역사인문요소에 의해 결정된 상품, 지역의 명칭으로 농산물의 이름을 지닌 특유의 농산물 표시”를 의미함. 또한 이 법에서는 “국가는 농산물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함. 등록을 거친 농산물지리적표시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등록조건, 등록과정 및 등록증서, 표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2008년 2월1일 부로 효력을 발휘했으며 현재에도 등록신청을 받고 있음.

3. 농산물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농업부의 역할

- 농업부는 중국 농업행정의 주관부문으로서 곡물, 가축, 생선, 과일, 채소, 차 등의 간단한 가공 농산물 및 초급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문이 직접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 고등가공 농산물 및 그 재료의 생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업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 농산물과 그 “생산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면서도 복잡하며, 지리적표시보호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농업관리 시스템은 각종 농산물의 지역구분과 생산조건에 대해 확실히 파악해야하며, 농산업의 발전에 있어 거시적이고도 체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농업부는 각 지방명과 특색을 가진 농산물의 산업화와 시장개척을 위해 뒷받침을 해주어야만 함.

-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그것이 상표 증명 신청이든 지리적 표시 등록이든 간에 모두 일반적인 상표등록 혹은 일반적인 행정허가와는 다름. 우선 어느 원산지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상품에 대한 품질확인을 실시함. 이때 지리적표시상품의 품질관리가 일반적인 관리와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바로 이미 생산된 어떤 상품이 지역명칭 상표를 사용하려면 그 상품의 특징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적요소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중국정부는 지리적 표시 및 보호를 시행할 가치가 있는 농산물, 특히 명산물, 특산물 등에 대하여 응당 성실한 분석과 연구를 실시하여 지리적표시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야 함. 또한 정부 관련 부문은 협력하여 지리적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중국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관리제도

-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제도는 2008년 2월 1일 정식 반포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만들어진 등록규범과 공동표시 사용규범 또한 곧 반포되어 실시될 예정임.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의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12개의 성에서는 이미 125개의 상품이 전문가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그 중 28개 농산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회에 공시될 예정임.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농산물품질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규범화하고,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품질과 특색을 보장하며, 농산물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의 초급 상품, 즉 농업활동 중 획득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상품을 의미한다.

2. “농산물 지리적표시”라 함은,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상품 품질과 관련된 특징은 자연생태환경과 역사인문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명칭으로 농산물의 이름을 지어 특유 농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농산물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등록된 농산물 지리적표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①농업부는 전국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사업을 책임진다.

②농업부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의와 전문가 평가 사업을 책임진다.

③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접수 및 처리, 일차 심사 작업을 책임진다.

④농업부가 설립한 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심사를 책임진다.

⑤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재배업, 목축업, 어업 및 농산물 품질안전 등의 방면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제5조 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은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농산물 지리적표시관리의 경비를 본 부문의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6조 ①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본 구역의 농업과 농촌경제발전계획, 정책, 자금 등의 방면에서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이용을 지지한다.

②국가는 국가 구성원이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여야 한다.

제 2장 등록

제7조 이 법에 의하여 농산물을 지리적표시등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역명칭과 농산물의 통용되는 농산물의 명칭
2. 상품의 독특한 품질과 특성 또는 특정한 생산방식
3. 주로 독특한 자연생태환경과 인문역사요소에 의해 결정된 상품의 품질과 특색
4. 상품의 제한된 생산 범위
5. 국가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하는 산지환경과 상품의 품질

제8조 지방인민정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사업협회 등이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이 될 수 있다.

1. 농산물지리적표시 및 그 상품에 대한 감독과 관리 능력을 갖춘 조직;
2. 지리적표시농산물의 생산, 가공, 매출제공지도서비스의 능력을 갖춘 조직;
3.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조직

제9조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 조건을 갖춘 신청인은 성급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자질 증명;
3. 상품의 특정 기술과 상품의 품질 평가에 대한 진술;
4. 산지환경조건, 생산기술규범 및 상품품질안전기술규범;
5. 지역범위 확정 문건과 생산지역분포도;
6. 상품실물건본품 혹은 건본품 사진;
7. 기타 필요한 증명 자료

제10조 ①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1차 심사와 현장 심의를 실시하여 1차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합격된 농산물에 대하여 해당 서류와 1차 심사의견보고서를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로 보내야 한다. 다만, 불합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1차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의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1조 ①농업부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신청서류와 1차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동시에 전문가의 심사를 실시한다.

②전문가 평가 사업은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 전문가심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①전문가심사를 통과한 때는 농업부농산물품질안전센터에서 농업부를 대표하여 공시한다.

②관련 단위와 개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농업부농산물품질안전 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공시에 이의가 없을 경우, 농업부는 등록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서>를 발급하고, 등록상품과 관련된 기술규범과 표준을 공표한다. 다만, 전문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때는 농업부에서 등록불가 결정을 내리며,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보냄과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서는 장기간 유효하다. 다만, 다음 각호 1의 경우 등록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규정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 혹은 법정 대표인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지역범위 혹은 상응하는 자연생태환경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①농산물지리적표시는 공공표시와 지역상품명칭을 상호 결합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용규범은 농업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표시의 사용

제15조 ①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단위와 개인은 농산물지리적표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산, 경영하는 농산물이 등록된 지역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2. 등록농산물과 관련된 생산경영자질을 이미 취득한 경우 ;
3. 품질기술규범조직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4. 지리적표시농산물시장을 개발, 경영할 능력을 갖춘 경우

②농산물지리적표시는 생산경영연도와 등록 증서의 보유자가 농산물지리적표시 사용 협의를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협의에서는 사용의 수량, 범위 및 관련 책임 의무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③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서를 갖고 있는 개인은 농산물지리적표시사용인에게 사용비를 받을 수 없다.

제 16조 농산물지리적표시 사용인은 다음 각호 1의 권리를 가진다.

1. 상품 및 그 포장에 농산물지리적표시의 사용
2. 선전으로 등록한 농산물지리적표시의 사용 및 전람, 전시, 전시판매의 참가

제17조 농산물지리적표시 사용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등록증서를 보유한 자의 감독, 검사
2. 지리적표시농산물의 품질과 신용
3. 농산물지리적표시의 규범에 맞는 사용

제4장 감독관리

제18조 ①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농산물지리적표시 감독관리작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등록된 지리적표시농산물의 지역범위, 표시사용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독,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농업부는 등록된 지리적표시농산물 또는 등록증서를 가진 자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지리적표시등록증서를 말소하여야 하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①지리적표시농산물의 생산경영자는 품질제어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서를 가진 자 및 표시 사용자는 지리적표시농산물의 품질과 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20조 누구든지 농산물지리적표시와 등록증서를 위조, 도용할 수 없다.

제21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의 농산물지리적표시에 대해 감독을 격려하여야 한다.

제22조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관리와 감독조사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

권을 남용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23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본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을 적용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농업부는 국외농산물지리적표시를 획득한 상품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효과를 인정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이 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회계산 소흥주 유한주식회사 방문 결과

- 오래 전, 제조 지방까지 유명하게 만들었던 소흥주는 세월을 뛰어넘어 몇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누리고 있음. 우수한 품질의 소흥주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계산 소흥주 유한주식회사’는 본래 물의 고향, 술의 고향이라 일컫는 소흥가교에 위치하여 소흥주 양조에 필요한 최상급 수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음.
- 회계산 소흥주 유한주식회사는 1743년 “주가무”에 의해 “주운집 주방”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으며 1951년 국영기업이 된 후 이름을 “지방국영운집주창”으로 변경하였음. 그 후 1993년 홍콩 ‘익통식품공예유한회사’와 합작하여 “동풍 소흥주 유한회사”를 건립하였음. 1998년 ‘동풍 소흥주 유한회사’는 상장기업인 ‘중국 경공업 주식유한회사’와 연맹하였으며, 2002년 ‘중국정공그룹’이 ‘중국 경공업 주식유한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동풍 소흥주 유한회사’는 중국 정공그룹의 계열회사가 되었음. 점차 “회계산” 상호가 유명해짐에 따라 2005년 12월12일 회사이름을 “회계산 소흥주 유한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7년 9월 29일에 ‘회계산 소흥주 유한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
- 회계산 소흥주 유한주식회사는 중국 내 최대의 소흥주 생산기업 중 하나이며 동종 업계에서 제일 처음 ISO9002 국제표준인증을 얻은 기업임. 심혈을 기울여 양조된 “회계산”표 소흥주는 적당한 도수, 깨끗한 맛, 풍부한 영양으로 매년 장수 상품중의 하나로 꼽힘. 연구에 따르면 소흥주는 21

종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8가지 아미노산이 인체에 꼭 필요하지만 인체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성분이라고 함. 따라서 소홍주는 현 웰빙 흐름에도 부합하는 술종의 하나라 할 수 있음.

- 일찍이 19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거행된 “파나마태평양 세계 박람회”에서, 소홍주는 국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열다섯 번의 금상과 함께 “동방최고의 명주”라는 칭호를 받았음.
- 1999년 “회계산” 상표는 국가중요보호 상표로 자리매김 하였음. 2000년 4월 회계산 소홍주는 국무원의 지정으로 중국 내 첫 번째 원산지보호상품이 되었음. 2001년 다시금 전국 황주업계에서 “녹색상품”의 영광과 ISO14001 환경보호인증을 취득하였음. 2005년 6월 “회계산” 상표는 중국 우수 상표로 평가받으며, “회계산”표 소홍주는 중국품질검사검역총국으로부터 “검열불필요상품”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음. 2006년 국가상무부는 “회계산”을 일컬어 중화민족의 전통이 담긴 곳이라 하였음. 회계산 소홍주 상품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멀리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및 유럽, 미국 등 30여개 국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격렬한 경쟁 속에서도 ‘회계산 소홍주 유한주식회사’는 새로운 기술과 제조방법연구를 지속하여 최근 몇 년 간 “팔년진”, “십년진”, “이십년진”, “오십년진양” 등의 소장용 주류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냈을 뿐만 아니라 이밖에도 “제취당”, “계산청”, “수향국색” 등 보양기능을 가진 새로운 황주를 만들어 냈음.
- 회계산 소홍주 유한주식회사’는 인재의 배양과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고등연구소와의 협조 하에 연구를 추진하거나 매년 회사의 연구원을 관련 업체로 파견하여 관련 기술을 익히게 하는 등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절강대학 방문 결과

- 절강성은 소홍황주, 상산호유, 안길백차…… 지방특색농산물이 지리적표시 증명상표에 등록한 후, 상품에 대한 반응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음. 절

강성에 등록된 45개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증명상표는 이미 189만 농민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있음.

- 더 많은 농민이 지방특색농산물 재배 중에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절강성은 회사+기지+농가+상표를 하나로 하는 현대농업생산경영방식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특색농산물의 질량보호시스템과 상표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표를 증명함으로써 "토지에서 생산된 지적산권"이 진정으로 농민의 "돈줄"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절강성이 현재 가지고 있는 45개 농산물의 증명상표는 사용범위가 전 절강성의 33개현, 419개 현진에 다다르며, 증명상표상품의 재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농가는 88만호, 151만 명에 다다름. 이에 따라 직접적 이익을 보는 농민만 해도 189만 명에 다다름.
- 절강성 공상국에 따르면, 지방명차인 "성산차"는 4년전 증명상표에 등록한 이래로, 완비된 품질감독관리시스템과 상표사용조치를 구축하여, 성산차의 명성을 알리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성산차의 생산량과 생산액이 모두 오르기 시작하여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4년 전의 200여배에 다다르게 되었음. 8개 생산합작사의 650가구의 차농이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음.
- 지리적표시증명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위치와 특정한 품질, 신용 및 기타 특징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은 반드시 본 지역의 자연요소와 인문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현재 인증을 통과한 증명상표는 대부분 모두 다년간의 역사를 지닌 지방특색 농산품과 공예품임. 절강성은 현재 50개의 "지리적표시증명" 상표를 획득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1위임.

□ 항주 서호 용정차 유한회사 방문 결과

- 중국국가품질감독국은 '서호용정차 유한회사'가 제출한 서호 용정차 지역표시 특허신청을 심사, 허가하였음. 이에 따라 '서호용정차 유한회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자회사에서 생산한 용정차 상품에 해당 원산지명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지역상품으로써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됨.

이것은 ‘서호용정차 유한회사’가 획득한 첫 번째 원산지 인증마크로서, 서호 용정차가 원산지 보호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을 상징함.

- 몇 년 전, 각지에서 “용정차” 경쟁업체가 증가하면서 용정차 시장은 넘쳐나는 상품으로 인하여 상품의 우열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전국 10대 명차 중 하나인 “서호 용정차”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호시는 용정차 전문판매점의 설치, 가짜 용정차 방지마크 사용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수많은 가짜 용정차 판매점은 교묘한 술수로 범망을 피하여 지속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며, 이는 일반인들의 용정차에 대한 인식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음.
- 3년 전, ‘서호용정차 유한회사’는 프랑스의 자국 와인보호 방법과 소흥주 주식유한회사의 방법을 참고하여 국가품질감독국에 서호용정차의 지역상품보호 신청을 하였음. ‘서호용정차 유한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한 이유는 첫째, ‘서호용정차 유한회사’의 “貢牌(공패)” 용정차가 국민용차로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임. 둘째, “貢牌(공패)” 용정차가 세 번 연속 절강성 최고 상표로 평가받음과 동시에 절강성의 명품 농산품으로 꼽혔기 때문임. 셋째, “貢牌(공패)” 서호 용정차가 서호지역 168평에서 생산한 용정차 잎을 그 원재료로 하고 있기 때문임.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지정한 원산지명 표기가능 기업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며 이 외에도 상품품질보고, 매입증명서 등에서 모두 국가지정기준에 부합하였음. 항주의 용정차 생산 기업은 모두 3-40여 개에 이르지만 그 중 원산지표시 등록신청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은 ‘서호용정차 유한회사’가 유일하며, 원산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또한 ‘서호용정차 유한회사’ 밖에 없음. 기타 서호용정차 생산회사가 이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히 먼저 국가품질감독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서호 용정차”의 원산지 인증 마크는 타원형의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음. 윗부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역 상품”이라고 쓰여 있으며, 중간에는 중국의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랫부분에는 만리장성 그림과 더불어 영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역 상품”이 쓰여져 있음. 이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차잎 관련 원산지 상품인증마크임.
- 본 원산지인증 마크는 2008년 4월에 있을 “서호용정차”의 봄 상품 출시

시 사용될 것임. 현재 서‘호용정차 유한회사’는 이미 “貢牌(공패)” 용정차의 포장지에 이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음. 이 인증마크는 “만약 가짜 인증마크(유사 도안 및 문건)사용 적발 시 <중화인민공화국상품품질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라고 명시한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국내외적인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위반 시 처벌을 받음.

○ 용정차 원산지 보호관리 방법(실행)

제1장 총칙

제1조(종지) 이 법은 《상품품질법》, 《표준화법》, 《농업법》 및 《원산지역상품보호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용정차의 생산경영질서를 규범화하고 용정차의 품질 및 특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용정차를 생산, 가공, 판매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과 용정차 원산지 보호관리기관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용정차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정차”라고 하는 것은 지명으로써 “용정”이라 명명되고, 원산지역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인가된 차 농원 내에서 생산된 차잎과 원산지역 내에서 《용정차》 표준에 따라 생산가공된 녹차를 포함한다.

제4조(원산지범위) ①용정차 원산지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2001년 제28호 공고에서 비준한 범위에 의거한다.

②용정차 원산지는 서호, 천당, 월주 이 3개의 지역을 의미한다.

천당 지역의 용정차 생산 범위는 수산, 여향, 부양, 임안, 동호, 건덕, 홍안 등 현(시, 구)에 속하는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③월주 지역의 용정차 생산 범위는 현 소흥시의 소흥, 신창에 속하는 현(시, 구) 행정구역 및 상오, 동양, 반안, 천대 등 현(시)의 부분향진구역을 의미한다.

제5조(용정차명칭) ①서호에서 생산된 용정차를 “서호 용정차”라고 부르며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차는 서호용정차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서호용정차는 기타지역의 용정차와 섞어 사용될 수 없으며, 용정차를 서호용정차와 같이 특정이름으로 명명할 경우에는 일정한 상표의 기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정이름의 명명은 차잎 산업화의 추진, 차농의 조직화 제고, 상표효과의 진일보한 발휘에 유리해야 한다.

③용정차를 특정 이름으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용정차원산지 보호부서에서부터 차례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성의 용정차원산지 보호관리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④각종 용정차 상품은 《용정차》 표준규정에서 각기 상응하는 등급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정부지도) 각급 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용정차원산지 보호작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유관부문과의 협조를 통해 원산지상품 보호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금지성요구) ①용정차 원산지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차잎은 용정차라고 부를 수 없으며, 원산지내에서의 심사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농원은 원산지상품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②원산지상품표시의 위조 및 도용은 금지되며, 생산된 용정차 상품에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짜로 도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③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앞의 규정에 위반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장 조직기구

제8조(성급기구) 용정차 원산지 보호신청이 비준된 후에는 절강성용정차 원산지보호신고위원회는 절강성용정차 원산지보호관리위원회를("성용정차관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며, 전성의 용정차원산지 보호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9조((시,현) 기구구성) ①용정차 원산지 범위 내의 서호, 전당, 월주 및 그 지역에 속한 각 현은 용정차원산지 보호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②용정차원산지 보호기구는 품질기술감독부에서 그 조직을 책임진다. 그 성원은 품질기술감독 행정부문, 농업주관부문, 사업협회, 과학연구단위 및 생산, 경영자 등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③용정차원산지 보호관리기구의 사무실은 품질기술감독부문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사업을 책임진다.

제10조(기구비준) 각 생산지와 현급 용정차 원산지보호관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고, 상급 용정차원산지 보호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1조(기구직책) ①각급 용정차 원산지 보호관리기구는 본 구역 내 용정차의 보호관리사업을 책임진다.

②현급관리기구는 본 방법에 의거하여 산지 내 용정차의 보호 실시 신청과 관리세칙을 제정해야 하며 아울러 본 방법과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생산자가 제출한 원산지상품전용표시 사용신청서를 처리하며 아울러 1차 심사의 진행을 책임진다.

③산지관리기구는 현급 용정차 생산자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합격을 비준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성급 용정차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원산지상품보호사무실에 등록을 보고해야 한다.

④각급 용정차 원산지 보호관리기구는 모두 본 구역 내의 용정차 생산에 대한 통계 분석과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원산지상품전용표시와 원산지 차농원 증서 관리

제12조(원산지 차농원 증서) 차잎의 재배인은 현금 용정차관리반에 차농원의 면적, 위치, 생산량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용정차원산지 차농원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본 증서는 재배자의 용정차 원료가 원산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13조(표시사용신청) 개인이나 단위가 용정차원산지 상품전용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심의 통과 후에 전용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전용표시형식) 용정차 원산지 보호전용표시는 국가가 규정한 원산지상품보호 전용표시 도안 및 용정차 산지명칭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제15조(신청절차) 생산자가 원산지상품전용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금 용정차보호반에 《용정차원산지 보호전용표시 사용신청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2. 상품생산자 소개서
3. 상품산지 특정지역의 증명(원산지역 차농가 증서)
4. 가공기업 상품포장과 표시 상표 견본
5. 상품품질검사에서의 불합격이 없다는 증명

제16조(1차 검사와 심사비준) ①현금 용정차 관리반은 생산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한다.

②1차 심사에서 합격한 것은 현관위원회에서 산지용정차관위원회에 보고하며, 합격 서류를 보내어 산지용정차관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심사에서 합격한 것에 한하여 《용정차원산지 보호전용표시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표시사용) ① 《용정차원산지 보호전용표시증서》를 가진 자만이 생산한 용정차 상품에 대한 상표, 포장, 광고, 설명서에서 용정차원산지 전용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단, 생산자가 원산지보호범위 이외의 작업장, 공동경영 및 외지에서 생산한 차잎은 일률적으로 용정차원산지 상품전용표시의 사용을 금한다.

제18조(증서와 표시제작) ①전용표시는 크기에 맞게 비율의 확대, 축소가 가능하며, 이에 맞추어 포장물 위에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장물 위의 부착이 가능하다.

② 《용정차원산지 차 농장 증서》, 《용정차원산지 보호전용표시증서》 및 접착용 용정차원산지 보호전용표시는 성의 용정차원산지 보호관리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해야 한다. 접착용 표시는 보호반에서 정량 발급한다.

③생산자가 용정차 원산지 보호전용표시의 포장 인쇄 시, 인쇄 기업은 반드시 산지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하며, 선정된 인쇄기업은 용정차 관리반에 등록해야 한다.

④생산자는 매년 차잎 포장물과 상표 사용 상황에 대한 연초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연말에는 사용수량을 계산하여 보호반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①생산자는 《용정차원산지 보호전용표시증서》에서 열거한 상품에 대해서만 상품사

용 전용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증서와 표시의 사용권은 양도 불가능하다.

제20조 용정차원산지 상품전용표시의 색깔, 도안은 첨부된 도면에 준해야 한다.

제21조 용정차원산지 상품전용표시에 대한 사용 신청에 대한 심사는 매년 한차례 실시한다.
심사 시기는 전 해 1월부터 당년 2월말까지이다.

제4장 생산, 판매관리

제22조(차 농장 관리) 용정차 차농원의 환경은 무공해 생산 환경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표준 재배 규범에 따라 차의 생산과 판매대장 및 농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3조(원료수매와 가공) ①가공단위는 용정차 잎 혹은 가공하지 않은 차를 수매할 때 《용
정차원산지 차농가 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원료수매 및 판매통계대
장을 만들어야 한다.

②가공 및 공예 시에는 표준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해당 생산능력을 갖추 동
시에 작업장, 창고 등은 국가위생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24조 용정차 실물표준견본의 제정은 《용정차》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 상품의 등
급과 품질은 용정차표준규정의 등급과 품질, 질량, 현물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25조 ①용정차상품의 품질은 상품 혹은 그 포장 상에서 밝히고 채택한 상품 표준 및 상응
하는 등급에 부합해야 한다.

②상품 관련 표시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6조 ①관리기구가 지정하여 자격을 획득한 검사기구는 용정차원산지 상품전용표시를 획
득한 용정차의 품질에 대하여 부정기적인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상품이 강제성 표준을 위반하거나 혹은 연속하여 2번 검사에서 불합격했을 시에는
원산지상품전용표시의 사용을 정지한다.

③용정차의 생산, 가공, 판매 과정 중에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여 본 조치의 요구에
위배되거나, 3번이상의 경고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전용표시의 사
용을 정지한다.

제27조(판매) ①원산지상품전용표시를 획득한 상품은 반드시 그 표시를 사용해야 하며, 물품
입하 시 응당 《용정차원산지 보호전용표시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입하물품에 대하여 검수제도를 실시하고 상품합격증과 기타표시를 만들어 집행해
야 한다.

제28조(관리경비) 원산지 상품전용표시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서비용과 관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품질기술감독부문이 법에 따라 처벌하며, 본 규정에 따라 용정차 원산지 보호관리위원회에서 사용전용표시를 파기한다.

제30조 원산지 상품보호관리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직무에 열성을 다하고, 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함;
- (2) 허위로 날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함;
- (3)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로 사욕을 도모하거나, 기업의 사례금을 받거나, 기업에 뇌물을 요구해서는 안됨;
- (4) 기업의 기술과 상업적 비밀을 폭로할 수 없음.

제5장 부칙

제31조 본 조치는 선포 즉시 시행한다.

제32조 본규정의 해석은 절강성 용정차원산지 보호관리위원회에서 책임진다.